

제2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2. 11. 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1월 9일 14:00 ~ 15:13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원장

김 소 영 부위원장

권 대 영 위원

김 용 재 위원

이 복 현 위원

이 승 현 위원

김 용 진 위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0차 및 임시 제9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2022년도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0차 및 임시 제9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
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307호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움을 알려옴에 따라, 신규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8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업권 IFRS17 도입('23.1.1.)과 관련하여 현행 원가방식의 예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타 제도 정비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9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 완화 등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 외국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판단시 참작사유를 추가하는 등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0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찰실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1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2호 『(주)알루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3호 『(주)자유투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4호 『(주)엔에스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5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6호 『(주)페이히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17호 『(주)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318호 『(주)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319호 『(주)신한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2년도 제6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각각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0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본허가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1호 『트러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트러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2호 『제이앤제이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제이앤제이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3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및 금융 실명법 위반에 대해 기관 및 임직원 조치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소위에서는 완전히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조속한 정례회의 상정 필요성도 있어 금감원 원안을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 소위에서의 결정임. 舊자본시장법 제49 조가 부당권유에 대한 조항인데 입법취지상 부작위를 규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제재 선례, 학설 등이 없는 상태임. 그래서 요건사실이 잘 부합되

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했음. 두 번째는 부행장보라는 직위가 있고 부행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행장이라는 직위가 있음. 그런데 부행장이라는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백을 했음. 그래서 DLF 때 내부통제 위반과 관련해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하고는 내용이 다름. 이것을 제49조 위반과 관련해서 과연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음. 그 앞에 ◎◎금융회사 사례가 있었는데 ◎◎금융회사는 ▲▲펀드를 가장 늦게까지 판매한 은행이고 규모도 적지 않음. 어떻게 보면 부당권유와 유사한 사안이 있었지만 좀 다르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었음. 저희가 내부통제라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CEO를 제재하기보다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사안들인데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컸고 매우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불완전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CEO들도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림.

- (위원) 의견 감사드립. 혹시 보고자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 (보고자) 부작위 문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음. 부작위에 의한 부당권유 성립여부는 결국은 작위와 동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음. 무엇을 했으면 손쉽게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 또는 문서나 말로 왜곡시킨

것만큼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런 측면에서 2019년 4월9일 전에 (주)우리은행 내부문서 등을 보면 (주)우리은행의 □□은 ◆◆ 펀드가 만기에 제대로 상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 아직 펀드가 설정되기 전이었고 예약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영업점에 알리면 부당권유와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위험성을 숨기고 거래의 계속을 지시한 것임. 무언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없어서 부작위처럼 보이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큰 가치로 삼아야 할 은행이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험성을 은폐한 것은 왜곡 설명하는 것만큼 그 잘못이 크다고 판단함.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조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음. 자본시장법 제49조의 부당권유 조항은 일반적으로 거래신청과 계약체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상품에 부합하는 구조이나 본건 (주)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는 20일간의 예약기간을 두고 마지막 일에 설정하는 판매구조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해서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우리은행에 대해서 부진정 부작위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재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이고 행정처분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함. 다음에 감독자 부분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DLF 제재심 당시에 내부통제 부분에 대해서만 부문장의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음. 펀드출시·판매, 이와 같은 영업과 내부통제에 관해서 □□이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있고 당시 ■■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 제재심에서도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함. ○○금융회사와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는

리스크 인지가 약간 간접적임. 2019년 7월에 검찰수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운용사의 돌려막기 의혹 등 리스크를 인지한 것임. 이에 비해서 (주)우리은행은 약 1개월간에 걸쳐서 ▲▲자산 실사, 경영진 면담, 편입자산 분석 등 직접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만기상환 불확실 리스크를 스스로 인지한 것임. 그럼에도 기예약고객에는 리스크를 알리지 않고 방치해서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부당권유 규모 또한 1,419억 원으로 ○○금융회사보다 2배가량 큼. 따라서 (주)우리은행이 ○○금융회사보다 부당권유의 정도가 훨씬 더 무겁다고 판단함.

-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
- (위원) 금감원에서 고생하셔서 조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DLF 때와는 달리 ▲▲에서는 부행장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음. 그렇기 때문에 DLF에서 내부통제이슈로 제재했던 것을 그대로 증거로 차용하기 어렵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들은 필요하다고 보임. 그리고 ○○금융회사보다 더 위험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주)우리은행은 최소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문서로 남았고 ○○금융회사는 문서가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셨음. 최소한 객관적인 판단들이 가능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음. 최소한 안건검토소위원회에

서 6~7차례 논의를 하면서 저는 동 사안의 성격과 사건의 특징상 그룹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더라도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아니면 주의경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정제안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있음.

- (위원) 위원님의 의견 잘 알겠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
- (위원) 이 안건은 사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소위에서 대심제를 거치는 등 7번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7번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음. 그 두 의견이 충분히 논의가 됐고, 제 판단에는 여기에서 개별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보다는 사모펀드 사태가 매우 심각했고 여전히 지금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제재심을 거쳤고 저희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안에 대해서 변경할만한 특별한 법률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위원) 동 제재안건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던 ▲▲ 자산운용 사모펀드상품의 최대판매사였던 (주)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상품 선정과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안건에 적시된 지적내용 외에도 (주)우리은행은 펀드만기 6개월 설정 등을 통해서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야기하고 모자펀드 구조를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투자 구조를 방치하고 시리즈 펀드를 통한

공모규제 회피, 소위 OEM 펀드라고 불리는 판매사의 운용 업무 관여 등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 이후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검사제재 이전에 (주)우리은행 차원의 내부감사,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한 자체 책임규명이나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 (위원) 일단 위원님 한 분은 금감원 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고, 한 분은 법률적인 우려를 제시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음. 나머지 분들 중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의견 없음.
- (위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추가로 없으면 오늘 논의를 기록에 남겨서 위원님 한 분은 수정을 요청하셨고 한 분은 법률적인 우려를 제시했지만 다수결에 따르시겠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했고, 나머지 위원분들은 금감원 원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음.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안의결로 위원회 차원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 (위원) 동의함.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논의내용은 기록으로 남기고 제323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아울러 본건의 내용이 금융회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내부통제이슈보다는 불완전판매라든지 제도보완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공감을 함. 앞으로 내부통제제도, 지배구조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감독당국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임. 금융위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감독원장님께서는 관련되어어서도 앞으로 계속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음.

-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음. 형평성 이슈임. 이것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케이스의 경우보다 더 적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행위에 대해서 과중한 처분이 됐다는 부분이 분명한 논점 중에 하나였음. 감독당국의 경우 제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논란방지를 위해서 부당권유로 해서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제재를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림.
- (위원)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제도 운영하고 제도개선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20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13분 폐회)